

목 차

☺ “양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라!”	
[학습 요령] 세법은 그 특성상 뒷부분을 모르면 앞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반복학습은 필수이며, 반복과정을 통해 앞뒤를 스스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처음 「법인세법」을 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혼자만의 문제로 힘들어 하지 말기를.....	
❖ 2018 개정세법 주요 내용	51
I. 법인세법 개정내용	51
I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63
III. 기타 주요세법 개정내용	76
❖ 최신 판결·결정사례 및 해석	82

제1부 총 설

제1장 결산 확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	99
제1절 결산의 확정	99
I.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와 적용	99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99
2. 일반기업회계기준	100
3. 중소기업회계기준	100
II.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 확정	100
1. 외부감사대상 법인	100
2. 결산 확정절차	101
III.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결산 확정	103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104
I. 관할세무서(=납세지)	105

II.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105
1. 일반적인 경우	105
2. 외부감사 미종결로 결산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106
III.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106
1. 일반법인의 제출서류	106
2.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108
3.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108
4.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제출서류	108
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13
6. 그밖의 제출서류(I) : 「법인세법」	117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17
(2)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122
7. 그밖의 제출서류(II)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24
(1) 해외금융계좌신고서	124
(2) 이전가격 관련 서류	127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 관련 서류	127
IV. 전자신고와 제출서류의 축소	136
1. 전자신고	136
2.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139
V. 성실신고 확인대상	140
1.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140
2. 성실신고확인자	141
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41
4. 제출서류	141
VI. 법인세의 납부	143
1.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143
2. 분납	143
VII.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144
1.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	144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45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45
4. 신고·납부 등	147
5. 농어촌특별세의 세무처리	148
6. 세무조정서식 및 절차(법인세법에서 별지서식규정)	148
VIII.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150
1.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51
2. 사업연도	151

3.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151
4. 법인지방소득세(내국법인)의 계산절차	151
5. 납세지	153
6.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154
7.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155
8.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157
9. 특별징수의무	158
10. 가산세	159

제3절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62

I. 기한후신고	162
1. 기한후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162
2. 기한후납부	162
3. 기한후신고에 따른 결정	162
4.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162
II. 수정신고	163
1.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167
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168
3. 수정신고의 효력	168
III. 경정청구	168
1. 원 칙	168
2. 후발적 사유의 경우	169
3. 경정청구의 효력 및 결과의 통지	173
4. 불복청구의 제기	173

제2장 법인의 분류, 법인세의 종류와 실질과세 및 소액주주 등 177

제1절 「법인세법」상 법인의 분류 177

1. 이익배당가능법인	177
2. 조합법인 등	178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178
4. 외국법인	179

제2절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종류 180

I.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80
II.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80
III.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80

IV.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80
제3절 실질과세	181
I.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181
II. 거래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181
III.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181
IV.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82
V. 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182
제4절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183
I. 소액주주	183
II. 지배주주	184
제5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지원	185
I. 중소기업 해당사업	186
II. 규모기준(매출액기준)	186
III. 중소기업 졸업기준	189
IV. 독립성 기준	189
V. 중소기업 적용유예	193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193
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94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195
V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95
1. 법인세법상 지원	195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내용 요약	195
VII.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99
1. 「중소기업기본법」	199
2. 「조세특례제한법」	201
VIII. 중견기업판정기준	202
IX.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202
1. 적용대상	202
2.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203
제6절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210

제3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11
제1절 순자산증가설과 세무조정	211
I.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의 계산	211
1. 익 금	212
2. 손 금	212
II.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및 세무조정	213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213
2. 권리의무확정주의	214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215
제2절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217
I.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17
II. 과세표준의 계산	218
III. 산출세액의 계산	218
IV.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218
제3절 법인세 세무조정	220
I. 세무조정흐름도	220
II.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21
1. 결산조정	221
2. 신고조정	223
III. 외부세무조정과 자기세무조정	225
제4절 소득처분	226
I.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증가된 소득)의 소득처분	226
1. 사내유보	226
2. 사외유출	231
3. 원천징수시기 특례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234
II.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감소된 소득)의 소득처분	240
1. △ 유 보	240
2. 기 타	241
제5절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246
I. 의의	246
1. 법인세회계의 의의	246

- 2. 법인사회계 적용범위 246
- II.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247
 - 1. 세율적용 247
 - 2.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 247
 - 3. 유동성분류 248
 - 4. 법인세수익표시 248
- III.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등 248
 - 1.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 248
 - 2. 이연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250
 - 3.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252
 - 4.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258

제2부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

제4장 익금 항목 263

제1절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263

- I. 사업수입금액 264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 264
 - 2. 추계결정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264
- II. 자산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264
- III. 자산의 임대료 265
- IV. 자산의 평가차익 265
- V.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266
- VI.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267
- VII.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 267
- VIII. 자본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분여이익 267
- IX.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금금 등 267
- X.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68

제2절 의제익금(擬制益金) 269

- I. 유가증권의 시가 미달 매입차액 269
- II. 간접외국납부세액 270

III.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금액	271
IV. 의제배당(擬制配當)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71
1. 내 용	271
2.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272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취	273
4.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277
5.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해산시 의제배당	277
6. 익금산입의 시기	277
7. 의제배당으로 취득한 금전 외 재산의 평가	278
V.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중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281
1. 적용대상	281
2. 간주익금의 계산	282
제5장 익금불산입 항목	287
제1절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288
I.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288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288
2. 감자차익	289
3.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291
II. 자산의 평가이익	294
III. 이월익금	294
IV.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또는 총당액	295
V.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95
VI.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95
VII. 이월결손금에 총당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295
VIII.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받을 법인세 상당액	298
IX.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298
X. 수입배당금액	298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298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301
3.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308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익금불산입 항목 312

I.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312

 1. 개 요 312

 2. 환입(=익금산입)시기와 방법 312

 3. 제출서류 313

II. 그밖의 것 314

제3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1)

제6장 손금 항목 319

I. 판매한 상품 등의 매입액과 그 부대비용 321

II.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321

III. 특수관계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시가미달 취득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 321

IV. 자산의 임차료 322

V. 자산의 평가차손 322

VI.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23

VII. 광산업의 탐광비 323

VIII.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323

IX. 무상기증하는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323

X.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323

XI.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우리사주의 장부가액 등 324

XII.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 보전금액 324

XIII.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금액 324

XIV.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기여금 325

XV.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325

XVI. 그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25

제7장 손금불산입 항목 329

I.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30

II. 주식할인발행차금 330

III. 법인세 등(법인세비용) 330

IV.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31
V.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미납부간접세	333
VI.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할 법인세 상당액	333
VII. 벌금·과료·과태료	333
VIII.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금·체납처분비·가산세 등	334
IX.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	336

제4부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

제8장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339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339
I. 매입자산의 경우	339
II.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의 경우	342
III.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취득한 자산	342
IV.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	343
V.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	343
VI.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343
VII.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 물적분할은 제외)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344
VIII.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344
IX.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	344
X. 그 밖의 자산	344
❖ 보 론 : 기업회계상 증여·교환 등의 경우 취득가액	345
제2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346
제3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	347
제4절 취득가액의 수정(=자산·부채의 평가)	349
제5절 현재가치할인차금	351
I. 장기할부조건부매매	351
II. 채권의 조정	351

제6절	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352
I.	신주발행비	352
II.	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352
제7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354
I.	금융자산	354
1.	의의 및 용어정의	354
2.	금융자산의 분류	357
3.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361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369
5.	손익	371
6.	금융자산의 제거	371
II.	금융부채	373
1.	기준서 적용	374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	374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377
제9장	재고자산의 평가	387
I.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387
1.	평가방법의 종류	387
2.	평가방법의 선택 및 신고	388
3.	재고자산평가손익의 세무조정	390
II.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390
III.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	393
1.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394
2.	재고자산의 종류	394
3.	평가원칙	394
4.	기말재고 원가평가	395
5.	기말재고 저가평가	396
6.	재고자산감모손실	399
7.	재고자산 매입약정관련 손실부담계약	400
IV.	계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401
❖	보론 : 【K-IFRS】 재고자산(기준서 제1002호)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405

제10장 유가증권의 평가	409
제1절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409
I. 평가방법의 종류	409
II. 평가방법의 신고 및 적용	410
III. 저가법에 의한 감액손실의 인정	410
IV.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조정	410
V.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	412
제2절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414
I.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414
II. 유가증권	415
1. 유가증권의 정의	415
2. 분 류	416
3. 단기매매증권	417
4. 매도가능증권	418
5. 만기보유증권	423
6. 전환권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425
7.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425
8. 손상차손 및 환입	425
III.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28
1. 지분법의 의의	428
2. 유의적인 영향력	428
3. 지분법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약	429
IV. 전환증권	431
1. 전환사채(CB)	432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440
3. 「법인세법」상 처리	441
❖ 보 론 : 【K-IFRS】 유가증권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448
제11장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67
I.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평가	467
1. 금융회사 등	467
2.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468
3. 평가손익의 처리와 평가방법의 변경	470
4. 최초 평가시 환산손익 인식방법	470

5.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470
II. 기업회계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72
1.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방법	472
❖ 보 론 : K-IFRS상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475
2. 해외사업장의 환산방법	476
3. 파생상품	478
제12장 손익의 귀속시기	485
제1절 귀속시기의 의의	485
제2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486
I. 일반원칙	486
1. 권리의무확정주의	486
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세법상 적용 범위	486
II.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486
1. 자산의 양도	487
2. 자산의 임대	488
3. 장기할부조건 판매·양도	488
4. 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	491
5. 이자소득 등(수입이자·수입보험료·부금·수입보증료·수입수수료)	495
6.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할인액	496
7. 수입배당금	497
8. 금전등록기 설치·사용법인[현금주의]	497
9. 리스료	498
10.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498
11. 징발재산의 매도 및 징발보상증권의 양도	498
12.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매출채권·받을어음의 배서양도	498
13. 차액 정산 파생상품 거래손익	498
14. 그 밖의 것	499
III. 유상사급(有償賜給)	504
1. 유상사급의 수익인식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504
2. 세무조정	506
3. 사례	506
제3절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수입금액)	510
I.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510
1. 일반적인 경우	510

2. 위탁판매 및 시용판매	510
3.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511
4. 대리관계	515
5. 반품가능판매	519
6.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	520
7. 상품권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521
8.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521
II. 부동산과 상품·제품 등 외의 자산처분손익의 귀속시기	522
1. 부동산	522
2. 동산(유가증권 등)	522
3. 처분손익	523
4. 세무조정	523
III.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귀속시기	523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의 손익인식	523
2. 건설형 공사계약의 회계처리	526
IV. 전기요류수정손익	534
1.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534
2. 세무조정	535
❖ 보 론 : 【K-IFRS】 수익 관련 기준서 제1115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37

제4절 서식작성	560
----------	-----

제5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2)

제13장 인건비 등	569
------------	-----

제1절 인건비	569
---------	-----

I. 인건비의 세무처리 요약	569
II. 상여금 등 손금불산입	572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572
2.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초과액	573
3. 지배주주 등에 대한 초과보수지급액	574
4. 손금인정규정	575
III. 연차유급휴가의 처리	575
1. 의 미	575
2. 유급휴가의 구분	575

3. 유급휴가의 회계처리	576
4.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	579
IV.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579
1. 주식매수선택권	580
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58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582
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582
V.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583
1. 현실적인 퇴직	583
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586
3.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587
4. 해산수당 등	590
5. 명예퇴직급여 등	590
6.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590
제2절 복리후생비	591
제3절 여비 및 교육·훈련비	591
제4절 공동경비	592
제14장 제세공과금(=세금과공과금)	601
I. 제 세	601
1. 손금에 산입하는 제세	601
2. 자본적지출로 보는 제세	602
3. 손금불산입하는 제세	602
4. 농어촌특별세	603
II. 공과금	603
1. 손금불산입 공과금	604
2. 손금인정되는 공과금	604
3. 자본적지출로 보는 공과금	605
제15장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607
I.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의 취득·관리·유지·수선비 등	607
II.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 등의 유지·관리비 등	607
III.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	608

IV.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610
V. 뇌물 등	610
V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610
❖ 보 론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과 동산	610

제16장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21

제1절 채권자불분명 사채(私債)이자 621

제2절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622

제3절 건설자금이자 623

I.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623
1.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 자본화 강제	623
2.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 자본화 선택	623
II.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624
III.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624
IV.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625
V.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626
1.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의 세무조정	626
2.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액의 세무조정	626

제4절 업무무관부동산·동산과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631

I. 업무무관부동산·동산	631
II.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631
III.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	632
1. 업무무관부동산·동산가액	632
2. 차입금과 지급이자	632

제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634

제6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637

I.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637
1. 국외지배주주	637
2. 손금불산입되는 배당간주이자의 계산	638
3. 세무조정	640

- 4.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640
- 5.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제외 등 640
- 6.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641
- 7. 손금불산입 순서 641
- 8. 제출서류 641
- II.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642
 - 1.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642
 - 2. 적용제외대상 642
 - 3. 손금산입 적용순서 642
 - 4. 제출서류 643
- III.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643
 - 1. 손금불산입규정의 내용 643
 - 2. 혼성금융상품 643
 - 3. 적정기간 643
 - 4. 과세되지 않은 금액 643
 - 5. 손금불산입금액 644
 - 6. 추후 손금산입 644
 - 7. 추후 익금산입 644
 - 8.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644
 - 9. 제출서류 644

제7절 기업회계상 이자비용(지급이자) 645

- I. 지급이자와 할인료 645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금전차입 경우 645
 - 2. 어음할인시 645
 - 3. 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645
 - ❖ 보 론 : K-IFRS상 차입거래 647
- II. 차입원가 자본화(건설자금이자) 647
 - 1. 의 의 647
 - 2. 차입원가 자본화 처리방법 648
 - 3.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대상 650
 - 4. 차입원가자본화기간 651
 - 5.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654
 - 6. 기업회계상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방법 655
 - ❖ 보 론 : 전기이전 자본화한 차입원가에 대한 처리 658

제17장	접대비	661
제1절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661
1.	접대비의 의의	661
2.	접대비의 범위	661
제2절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663
I.	한도 계산 전 직부인(直否認)	663
II.	한도 계산	664
1.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664
2.	공공법인의 경우	668
3.	문화접대비 지출이 있는 법인(2020.12.31.까지 적용)	668
III.	자산에 계상된 접대비의 처리	669
IV.	현물접대비의 가액평가	671
V.	접대비의 귀속시기	672
제18장	감가상각비	681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와 계산요소	681
I.	의 의	681
II.	계산요소	682
제2절	감가상각대상 자산	683
I.	법인소유의 자산	683
II.	사업용 고정자산	683
1.	기본 내용	683
2.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대상자산	684
III.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686
제3절	취득가액	688
I.	취득가액의 산정	688
II.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688
제4절	즉시상각의 의제	692
I.	의 의	692
II.	내 용	692
1.	본래 의미의 즉시상각의제	692

2. 확장적 의미의 즉시상각의제	693
제5절 잔존가액	696
제6절 내용연수	697
I. 기준내용연수	699
II. 신고내용연수	699
III. 승인내용연수	699
1. 승인신청사유	700
2. 승인신청	701
IV. 내용연수의 변경 및 수정	702
1. 내용연수 수시변경의 제한	702
2. 중소기업의 내용연수특례적용	703
3. 서비스업의 내용연수특례적용 및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703
4.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	705
5. 중고자산 및 합병·분할 등의 수정내용연수	708
6.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711
V.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711
VI.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상각비율)	712
VII.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712
제7절 감가상각방법	714
I. 감가상각방법의 유형	714
II.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계속 적용	714
III.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715
제8절 상각범위액 및 시부인계산	716
I. 감가상각방법 유형별 상각범위액의 계산	716
1. 정액법	716
2. 정률법	716
3. 생산량비례법	717
II.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의 상각범위액	718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정액법	718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정률법	718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719
III.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기장방법)	719

IV.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720
1. 개별자산별 시부인	720
2.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 : 월할계산	721
3. 사업연도의제 등 1년 미만 사업연도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	721
4.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721
제9절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추가 손금산입	723
I. 개 요	723
II. 종전 감가상각비	723
1. 2013.12.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723
2. 손금산입한도	724
III. 기준감가상각비	726
1. 2014.1.1. 이후에 취득한 자산	726
2. 손금산입한도	726
IV. 서 식	728
제10절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부인액의 처리	729
I. 개별자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729
II. 개별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729
제11절 평가중간 자산의 감가상각	730
I. 평가중 당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730
II. 평가중 당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730
제12절 감가상각의 의제	731
I. 의 의	731
II. 적용대상 법인	732
III. 적용 제외 법인	732
제13절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733
제14절 세무조정서식	735
제15절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특례상각	741
❖ 보 론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표”	741

제16절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750
I.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750
II. 감가상각의 의의	752
III. 감가상각계산요소	752
1. 취득원가	752
2. 잔존가치	756
3. 내용연수	757
4. 감가상각방법	757
5.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759
IV. 취득 이후의 지출	762
1. 유형자산	762
2. 무형자산	762
3. 자본적지출 발생시 감가상각	763
4. 일부 대체자산 및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 유형자산	765
V.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766
1.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	766
2. 비용배분	767
3. 기장방법	767
4. 재무상태표상 표시	767
VI. 손상차손 및 환입	768
1. 의 의	768
2.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768
3.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인식 및 감가상각액조정	770
4. 「법인세법」	770
VII. 유형자산의 재평가	772
1. 재평가 대상기업의 종류	772
2.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의 산정	772
3. 재평가 주기	773
4. 재평가 시기	773
5. 재평가 범위	773
6. 장부금액 계산	773
7. 회계처리	773
8.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774
9. 재평가자산의 처분	774
10. 「법인세법」	774
VIII. 폐기 및 처분	776
❖ 보 론 : 【K-IFRS】 유형·무형자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777

제17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801
I.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801
1. 관련비용 등 손금불산입특례 적용 승용자동차	801
2. 특례적용 제외 승용자동차	801
II.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상여 소득처분	802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803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805
3.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806
III.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특례	811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811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813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813
IV.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특례	813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813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추인	814
V.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작성실무	817
1. 기본자료	817
2. 차량1120 내역	818
3. 차량2230 내역	818
4. 차량4480은 관련비용합계가 1천만원 이하여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업무사용비율 100% 인정)	818
5. 차량별 세무조정	818
제19장 준비금	823
제1절 「법인세법」상 준비금	823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23
2. 책임준비금	823
3. 비상위험준비금	824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825
I.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20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폐지	825
1. 연구·인력개발의 범위	825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825
3.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826
4.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및 환입(=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827

- II.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830
 - 1. 설정대상법인 830
 - 2. 손금산입대상기간 830
 - 3. 손금산입금액 : $\text{Min}(\text{①}, \text{②})$ 830
 - 4. 환 입 830
- III.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830
 - 1.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범위 830
 - 2. 환입 : 상기 'II. 2.'와 동일 831

제20장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833

- 제1절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833**
 - 1. 내 용 833
 - 2. 일시상각충당금 등 834
 - 3. 신고조정의 허용 834
 - 4.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특례 834
 - 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등 수령액의 손금산입 특례 845
 - 6.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845
 - 7.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845
 -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845

제2절 기업회계상 정부보조금 등 846

- I.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846
- II. 정부보조금 846
 - 1. 의 의 847
 - 2. 용어의 정의 847
 - 3. 회계처리 847
 - 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정부보조금 850
 - ❖ 보 론 : K-IFRS상 정부보조금 851
- III. 공사부담금 851
 - 1. 의 의 851
 - 2. 회계처리 851

제21장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853

- 제1절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등 853**
 - I.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853
 - 1. 퇴직급여제도 853

2. 퇴직연금제도	854
3.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854
4. 그 밖의 사항	855
II. 퇴직급여충당금	856
1.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범위	857
2. 설정대상자	857
3. 손금산입한도액	857
4. 연도별 설정률 감소에 따른 익금환입의 배제	860
5. 충당금의 상계	860
6.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860
7.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시	861
III. 퇴직연금부담금	866
1. 내 용	866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866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867
IV. 퇴직급여의 지급순위	869
제2절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872
I. 퇴직급여충당부채	872
1. 의 의	872
2. 회계처리	873
II.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876
1. 의 의	876
2. 회계처리	876
III.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881
1. 의 의	881
2. 회계처리	882
3. 「법인세법」상 처리	882
❖ 보 론 : 【K-IFRS】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급여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884
제22장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895
제1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등	895
I. 대손충당금	895
1. 설정대상 채권	895
2.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897

3.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898
4. 환 입	899
5. 합병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900
6.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900
7.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900
II. 대손금	902
1. 대손금의 범위	902
2.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908
3. 대손금의 귀속시기	908
4.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912
5. 대손요건 불비 채권의 대손처리시	913
6. 대손금의 회수	913
III. 구상채권상각충당금	923
1. 설정대상법인	923
2. 손금산입 한도액	924
3. 신고조정의 허용	924
4. 대손금과 상계	924
5. 환 입	924
6. 제출서류	924
제2절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925
I.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925
II. 대손충당금	925
1. 의의	925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대손상각비의 계상	925
3. 대손의 추산	926
4.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상 표시	926
❖ 보 론1 : K-IFRS상 손상인식	930
III. 대손금	938
1. 대손의 확정	938
2. 대손금의 회수	938
IV. 채권·채무조정	941
1. 의 의	941
2.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942
3. 조정시점	942
4. 조정방법	943
5. 채무자의 회계	943

6. 채권자의 회계	948
7. 「법인세법」	952

제6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23장 합병 및 기업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957
제1절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957
I. 원 칙	958
II. 비적격합병에 따른 과세	958
1.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958
2.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959
3. 결손금과 자산·부채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959
III.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	959
1. 적격합병의 요건	959
2. 자산조정계정의 계상	963
3. 결손금과 자산·부채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965
4. 익금산입	966
IV.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68
1.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68
2.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68
제2절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	971
제3절 물적분할시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71
제4절 현물출자·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72
I.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72
II. 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72
제5절 적격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973
I.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973
II. 감각상각범위액	973
제6절 기업회계상 사업결합	974
1. 의의	974

2. 사업결합의 식별	974
3. 적용배제	974
4. 사업결합의 방법	975
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975
6. 취득법의 절차	976
7. 잠정금액의 추후 조정	985
8.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988
❖ 보론1 :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발생(K-IFRS 적용)	988
❖ 보론2 : 특수한 경우 합병시 세무조정(K-IFRS 적용)	992

제2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소득금액 계산 특례 995

제1절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의 부인(否認) 995

I. 개 요	995
II. 적용요건	995
III. 특수관계인의 범위	996
IV.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범위와 그 시기적 판정기준	999
V.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 및 계산의 유형	1000
1. 「법인세법」의 예시적 규정	1000
2.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예시적 규정	1002
VI.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행위·계산의 유형	1003
VII. 시가의 계산	1004
1. 시가의 의의	1004
2. 시가의 산정	1004
VIII.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정	1007
IX.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세무조정	1016
1. 익금에 산입되는 분여이익의 계산	1016
2.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1021
X.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1025

제2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1031

I. 개 요	1031
II. 가지급금의 범위	1031
1.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1031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1033

III. 이자율 및 인정이자율의 계산	1035
1. 이자율의 적용	1035
2.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036
3. 인정이자율의 계산	1037
IV. 세무조정	1038
V.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및 미수이자 계상의 허용 여부	1038
VI. 미회수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계상액 등의 세무조정	1039
1. 회수지연시의 처리	1039
2. 회수지연에 따른 상대방의 처리	1041
VII.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1042
VIII.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의 귀속시기	1042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1051
I.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1051
1. 개 요	1051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제출	1052
3.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1053
4.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1054
5.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055
6.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거래	1056
II. 외국자회사 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조세피난방지세제)	1058
1. 개 요	1058
2. 합산과세대상	1060
3. 합산과세내용	1060
4.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1061
5. 국외출자명세서의 제출	1062
제25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1065
제1절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065
I. 중소기업간의 통합	1065
II.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066
제2절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67
I.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1067
II.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양도차익	1067

III.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1068
IV.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1068
V.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1069
VI.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1069
VII. 제약업 경영기업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	1070
제3절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등	1071
I.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1071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071
제4절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1072
I.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특례	1072
II. 모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특례	1072
III.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	1074
IV.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례	1074
V.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특례	1075
VI.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의 처분 및 주식교부비율 특례	1075
1. 처분특례	1075
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1075
VII. 다음의 사유 발생시 기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1076
제5절 그밖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1076
제26장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77
제1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77
1. 적용요건	1077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79
3. 익금산입(=환입)	1079
제2절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분할과세)	1081
1. 적용요건	1081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81
3. 익금산입(=환입)	1082

제3절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84
1. 적용요건	1084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84
3. 익금산입(=환입)	1085
제4절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그밖의 지원세제	1085

제7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27장 기부금	1089
제1절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1089
1. 기부금의 의의	1089
2. 기부금의 주요내용	1089
제2절 기부금의 종류와 손금산입한도	1092
I. 기부금의 종류	1092
1.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1092
2. 이월결손금	1093
3. 기준소득금액	1094
II. 법정기부금	1094
III. 지정기부금	1099
IV. 비지정기부금(=기타기부금 또는 전액 손금불산입기부금)	1109
제3절 현물기부의 가액계산	1110
제4절 귀속시기	1112
제5절 자본적지출로 보는 기부금	1113
제6절 기부금영수증과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및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1113
제28장 과세표준의 계산	1125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1125
I. 결손금의 범위	1125

II. 결손금의 소급공제	1126
1. 적용요건	1126
2. 소급공제대상 사업연도	1126
3.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의 계산	1127
4. 환급 및 환급가산금	1127
5. 경정 및 징수	1127
6. 세무조정서식	1128
III. 결손금의 이월공제(=이월결손금)	1130
1.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소멸	1130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131
3.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멸	1131
4. 익금산입사항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멸	1132
IV. 추계결(경)정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1132
V. 세무조정서식	1132
제2절 비과세소득	1135
I.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1135
II.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135
제3절 소득공제	1138
I.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1138
1.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1138
2.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배제	1140
II.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1141
1. 공제요건	1141
2.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141
3. 소득공제 금액의 계산=①+②(음수인 경우는 0으로 봄)	1142
4. 제출서류	1142
III.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	1143
IV. 세무조정서식	1143
제4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1145
제5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	1146
제6절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147
I.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과 신고	1147
1. 선택가능한 방법	1147

2.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와 변경	1148
II.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규정	1148
1. 위 'I-1'의 ①을 적용하는 경우	1148
2. 위 'I-1'의 ②를 적용하는 경우	1148
제29장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1151
제1절 세 율	1151
1. 조합법인 등 세율적용	1152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적용	1154
3. 영리법인의 법인세율 변천(%)	1154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55
I. 적용대상과 세율	1155
II. 적용 제외	1158
III.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1163
IV.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163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166
I. 개요	1166
II. 적용대상 법인	1167
III.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 등	1168
1.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 및 산정	1168
2. 신고방법의 적용 및 무신고의 경우	1168
IV. 기업소득의 범위	1169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항목	1169
2.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1169
V.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액·임금증가액 등	1171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	1171
2. 임금증가액	1173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출연금 등	1174
VI.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1176
1. 해당 사업연도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1176
2. 차기환류적립금의 사후관리	1176
3.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1176
4.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177

5. 상황별 사례검토	1177
VII.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1178
1. 추가납부사유	1178
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1179
VIII.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1180
제4절 면제·감면세액	1185
I. 면제·감면세액의 계산방법	1186
II. 법인세의 면제	1187
1.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1187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87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88
4.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89
5.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90
6.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90
III. 법인세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한 공통사항	1190
1. 감면개시연도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1190
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1191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1191
4.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의 다른 유형으로의 변경	1192
5. 감면세액의 승계	1192
IV.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1193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93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03
3. 중소(중견)기업 특허권 등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09
4.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11
5.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1213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214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1215
8. 법인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217
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223
10.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및 감면	1224
11.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1225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1226
1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27
14.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1229
1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29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조세감면	1230
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1244
18.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1246
1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49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251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1253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53

제5절 세액공제 1265

I.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265
1. 외국납부세액공제	1265
2. 재해손실세액공제	1284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회계 경정세액공제)	1285
II.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286
1.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	1288
2. 사업부문의 분할 및 포괄양도의 경우	1289
3.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투자금액의 계산	1289
4.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및 승계	1291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1293
III.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종류 및 내용	1296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	1296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299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1300
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301
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27
6. 특허권·기술 등 취득금액 세액공제	1328
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328
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330
9.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세액공제	1332
1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1333
11.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1335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337
1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338
1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1339
1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39
1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41
1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군 전역 후	

복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42
18.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42
19.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1343
20. 청년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1347
2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49
2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353
2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354
2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1360
2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361
26.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61
2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62
28. 대학에의 연구·인력개발설비 기부 세액공제	1363
29.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1364
3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364
31. 금사업자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65
32.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1366

제6절 최저한세 1367

1. 적용대상과 그 범위	1367
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368
3.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각종 감면 등의 적용 배제 순서	1369
4. 적용 배제된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이월공제 등	1370
5. 최저한세에 따른 납부세액의 계산	1371
6. 최저한세의 세무조정 서식	1371
7. 최저한세,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 제한여부 일람표	1372

제7절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위와 중복적용 배제 1377

I. 면제·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377
II.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적용 배제되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1378
III.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378
1.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378
2. 외국인 투자지분이 있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공제·감면	1379
3.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한부 면제·감면 등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380
4. 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 배제	1382
5.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중복적용 허용	1383

제8절 무신고·과소신고 및 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1384

I. 추계결정·경정시 공제·감면 등의 적용 배제	1384
----------------------------------	------

II. 무신고·과소신고,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1384
제9절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1386
I. 준비금의 미사용분 및 임의환입시 이자상당액의 가산징수	1386
II.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추징	1386
1. 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의 조기처분 및 용도변경	1387
2. 세액의 공제·감면요건 위반시 추징 등	1389
제10절 공제·감면세액의 신청 및 세무조정서식	1391
1. [별지 제8호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1391
2. [별지 제8호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1391
3. [별지 제8호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1392
4. [별지 제8호 부표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1392
5. [별지 제8호 부표 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1392
6. [별지 제8호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1393
제30장 가산세	1397
제1절 가산세의 유형과 내용	1397
I.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397
1. 「법인세법」상 가산세	1397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402
II.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1404
III. 장부의 비치·기장 및 증명서류의 수취·보관과 관련 가산세	1405
1.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무기장 가산세	1405
2. 증명서류의 수취·보관과 가산세	1405
제2절 가산세의 감면	1415
I. 가산세의 10%~50% 감면	1415
II. 가산세의 100% 감면	1416
1.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416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1417
III.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	1417

제31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1423
제1절 중간예납세액	1424
I. 중간예납 대상법인	1424
II. 중간예납기간	1425
1. 원 칙	1425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1425
3. 신설합병의 경우	1425
III.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426
1.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	1426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1428
IV.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징수	1430
1. 납부기한	1430
2. 분 납	1430
3. 미납세액의 징수	1431
V. 제출서류 및 전자신고	1432
제2절 수시부과세액	1434
I. 수시부과사유	1434
1. 법인세 포탈우려법인	1434
2.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법인	1434
II. 수시부과세액의 결정	1434
1. 법인세 포탈우려법인	1434
2.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법인	1435
제3절 원천납부세액	1436
I. 법인세의 원천징수	1436
1.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1436
2. 소액부징수	1438
3.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1438
4.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1440
5. 원천징수시기 및 귀속연도	1440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441
7.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1442
8. 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1442
9.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자소득의 계산	1442
II.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43

Ⅲ.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443
1.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445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1447
3. 실물양도 등 집합증권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447
4.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 중도매도시 기공제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1447

제4절 세액의 환급	1450
-------------------------	------

제8부 보 론

제32장 연결납세(=연결법인세)	1453
--------------------------------	------

I. 개 요	1453
II. 연결납세의 적용대상	1454
1. 연결모법인 제외 법인	1454
2. 연결자법인 제외 법인	1454
III. 적용의 신청 및 승인	1454

제33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457
------------------------------	------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범위	1457
----------------------------	------

I. 「민법」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1457
II. 사립학교법인	1457
III. 그밖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1457
IV.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1458
V. 비영리외국법인	1458

제2절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1459
------------------------------	------

I. 사업소득	1459
II. 이자·배당소득	1462
III.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	1463
IV. 고정자산처분수입	1463
V.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1464
VI. 기타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	1465

VII. 부수수익	1465
제3절 구분경리	1468
I. 자기자본의 계산	1468
1. 공통자산 및 부채	1468
2.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비영리사업용 자산	1468
3.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수익사업용 자산	1468
II. 공통손익의 계산	1470
1. 개별익금과 손금	1470
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470
제4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1471
I.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고특례	1471
1. 과세특례	1471
2. 신고특례	1471
II. 재무상태표 등 미첨부시 무신고간주 배제	1472
III. 기장의무의 면제	1472
IV.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1472
V.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472
1. 손금산입 범위	1472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제외단체	1477
3. 환입사유 및 시기	1477
4. 환입시 이자상당액의 가산	1477
5. 제출서류	1477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1477
VI.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82
1. 개 요	1482
2. 자산양도소득	1483
3. 신고납부	1483
VII.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84
제5절 수익사업 개시신고	1484
제6절 결손금 공제	1484
제7절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처분	1485

제8절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486
I. 개 요	1486
II.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1486
III.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1486
IV.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487
V. 기 타	1487
제3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489
I. 청산소득의 의미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1489
II. 납세의무자	1489
III.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490
IV. 세액의 계산	1490
제35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1491
제36장 동업기업과세	1491
기 타 계정과목별 법인세무조정과 신고·납부 checklist 및 기타	1491

